

보 고 안 건

연번	유형	안 건 명	제안부서
1	정관변경	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정관 개정(안) 보고	공공보건 의료재단

공공보건의료재단

1.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정관 개정(안) 보고

보고근거

-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(정관)제3항

③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시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 5. 16.>

개정내용

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(‘20.6.4)에 따른 개정
 - － 제12조(임원의 직무) 내 “임원의 의무와 책임”, “의무와 책임을 미이행한 경우 해임 및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”할 수 있는 조항을 각각 신설
 - － 제20조(임원의 결격사유) 내 결격사유 7개호에서 4개호로 개정
 - － 제37조(결산)제1항에서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서울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결산보고서를 2개월 이내로 개정

향후계획(안)

- 시의회(보건복지위원회) 정관 개정(안) 사전 보고 : ‘20. 6월
- 이사회 정관 개정(안) 의결 : ‘20. 6~ 7월
- 서울특별시장 승인 및 보건복지부 허가 : ‘20. 7월
- 정관 개정(안) 시행 : ‘20. 7월

정관 개정(안)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2조(임원의 직무) ①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</p> <p>②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 다만,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제8조제3항 각 호의 당연직 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③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.</p> <p>④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며, 유고시에는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<u>〈신 설〉</u></p> <p><u>〈신 설〉</u></p>	<p>제12조(임원의 직무) ① <좌동></p> <p>② <좌동></p> <p>③ <좌동></p> <p>④ <좌동></p> <p>⑤임원은 법령과 정관 등 재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1.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2.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재단에 손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3.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</p> <p>⑥시장은 임원이 제5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, 이를 게을리한 경우 출자·출연기관 운영심의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고, 재단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20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삭제<2018.07.06.></u> 2. <u>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</u> 3. <u>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</u> 4. <u>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</u> 5. <u>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</u> 6. <u>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/u> 7. <u>재단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</u> 	<p>제20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미성년자</u> 2. <u>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, 제6호의3, 제6호의4,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</u> <p><u><삭 제></u>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3. <u>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/u> 4. <u>제12조제6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/u>
<p>제37조(결산) ①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당해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제37조(결산) ①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당해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